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김인수 의원의 7인

2.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09년 6월 2일
- 회부일자 : 2009년 6월 4일

3. 제안이유

- 「주택법」 개정(2009. 3.25, 법률 제9405호)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4호)으로 인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정비 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위원회 구성원, 간사 등 인원의 표기와 직제개편에 따른 과장 명칭 개정 (안 제4조, 제9조)

“인” 을 “명”으로, “건축문화과장을 “건축디자인과장”으로 개정.

나.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안 제6조)

위원의 임기는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에 따라 위촉하거나 해촉함.

다. 주택건설사업 등에 따른 임대주택 의무공급비율 신설 (안 제13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할 때에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전에 미리 완화된 용적율로 건설하는 주택에서 임대주택의 공급비율 100분의60에 해당하는 면적을 도지사 등 인수자에게 공급하여 임대주택건설을 촉진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정비 대상인 단순 심의위원회로 결정되어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